제적/자퇴

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시스템 학적 메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❑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본인이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적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❑ 제적

○ 제적 대상자

-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
-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
-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
- 징계로 출학된 학생
- 자퇴한 학생
- 타교에 입학한 학생
- 사망,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
-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

○ 제적의 절차

- 등록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적 대상자를 각 대학별로 조사하여 수업일수 1/3선 이후에 제적 처리합니다.

❑ 자퇴

○ **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중 기한에 제한없이 자퇴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**

○ 자퇴를 위한 절차

-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이 서명한 자퇴원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(부)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(원)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○ 자퇴시 구비서류

- 자퇴원서(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)